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95
----------	-------

발의연월일 : 2019. 3. 26.

발의자 : 이혜훈 · 김경진 · 정인화

김삼화 · 김관영 · 이종명

조경태 · 유승민 · 이언주

김상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 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가교통위원회는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의2.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1. ~ 3. (생 략) <u>&lt;신 설&gt;</u></p> <p>4. (생 략)</p>	<p>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u> <u>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 4. (현행과 같음)</p>